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2. 4. 20 선고 2021가단8395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동하

피 고 1.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현

2. C

3. D

변 론 종 결 2022. 2. 23.

판 결 선 고 2022. 4.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와 E 사이에 파주시 F 전 1,2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3/9 지분에 관하여 2019. 4. 21.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B와 G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9. 4. 21.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C는 2565/5517 지분에 관하여, 피고 D는 500/5517 지분에 관하여 각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20. 6. 11. 접수 제477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3565/5517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20. 4. 6. 접수 제281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6. 4. 10. 조합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200만 원(이후 5,600만 원으로 변경), 채무자 망인인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해 주었다.

나. 망인은 2006. 8. 17. J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망인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고, 2006. 9. 11. 위 조합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은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다. 피고 B는 2013. 3. 11. J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1억 5,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면서, J로부터 그 근저당권과 피담보채권을 함께 양도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 3. 12. 그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원고는 2018. 12. 27.경부터 2019. 6. 12.경까지 5차례에 걸쳐 E에게 합계 3,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E의 자녀인 G는 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가 E, G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청구소송(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가소78261)에서 2020. 6. 11. ‘E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292,463원과 그중 3,000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지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망인은 2019. 4. 21.경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E와 자녀인 K, G, 피고 B가 있었다. 피고 C, D는 2020. 3. 30. 피고 B를 비롯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4억 8,23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 한 2019. 4. 21.자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에 따라 2020. 4. 6. 피고 B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되었다.

사. 피고 C, D는 2020. 5. 4.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2020. 6. 10. 피고 B에게 잔금 4억 3,23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그다음 날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 을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분할협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 존재 여부

원고가 E와 G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피고는, E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E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청구소송에서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인 피고는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수는 없다고 본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사해행위 해당 여부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고 그러한 유언이 없을 때에는 법정상속분에 의하나,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는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분이 있고(민법 제1008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공동상속인은 상속 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그 기여분을 공제한 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지정상속분

또는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하므로(민법 제1008조의 2 제1항), 지정상속분이나 법정상속분이 곧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이 있는 한 그에 의하여 수정된 것이 재산분할의 기준이 되는 구체적 상속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위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망인이 부담하던 J에 대한 채무를 사실상 피고 B 혼자 변제하였고, 이러한 사정과 그 변제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가액 등을 감안하여 다른 공동상속인들인 E, K, G가 그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따른 재산분할결과가 E, G에 대하여 그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광민